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6. 1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2년 5월 31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4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6.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가. 제안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 개정되어 우리구도 관련 조례명 등을 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정의 및 적용범위와 지역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인점시장의 기준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요건 및 관리등에 관한사항
 -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관리에 관한사항(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보조금 지원등에 관한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안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항(안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 상 옥)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 법률 제9887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형식은 총9장, 42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구역,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법령의 이해와 적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 안 제2장 시장의 관리와 운영에는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용 고객 및 상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였으며
 - 안 제3장 인정시장의 운영에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취소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정시장의 지정 및 관리, 취소업무를 명확히 하였고
 - 안 제4장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구역의 관리를 규정하여 상권의 통합과 규모의

- 적정화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개정으로 보이며
- 안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시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였고
 - 안 제6장 상인회 설립과 등록에는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취소, 상인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예산지원,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상인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는 제28조와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여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시장관리자의 업무태만 시 지정취소 규정을 둠으로써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 안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는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관리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 안 제9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는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신설된 조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한 자와 이 법에 의한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 상점가의 상인을 대표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 안 부칙은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제2조 유효기간에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의 유효기간에 근거한 것임.

-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제시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나 2006년 3월 9일 제정된 이후 처음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 등 변경요인이 발생시 신속히 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일괄 정비한 것으로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33 호
----------	---------

제출연월일 : 2012.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 개정되어 우리구도 관련 조례명 등을 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정의 및 적용범위와 지역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다. 인정시장의 기준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요건 및 관리등에 관한사항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마.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관리에 관한사항(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보조금 지원등에 관한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사.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안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항(안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2.4.12 ~ 5.2)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반부패영향평가 심사여부 : 심사완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시장 내 적법한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 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

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적용범위) 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시장의 관리 및 운영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

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인정시장의 운영

제7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점포는 시장구역 내 적법한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인정시장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

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4장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

제12조(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시장 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 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장 활성화 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시장 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9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0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안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안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안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신청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 태만으로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

를 거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7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38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1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상인회, 인정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징수관(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금고 귀하			수입일 부 인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 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정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징수관(인)		수입일 부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징수관(인)		수입일 부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금고 귀하		수입일 부 인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영등포구청장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p>「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 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위 신청인 (인)</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p>제 호</p> <p>수 신 :</p> <p>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p> <p>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p> <p>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영등포구청장	이의제기 일 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재래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2.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3. “시장상인회”라 함은 법제 40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를 말한다.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조례에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인”이라 함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시장 내 적법한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 		

현행	개정안
<p>4.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등이 사업시행구역안에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청장에게 등록된 시장을 말한다.</p> <p>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 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p> <p>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p> <p>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p> <p>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p> <p>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p>

현행	개정안
<p>제3조(적용범위) 재래시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4조(지역시장 육성계획) ①구청장은 매년 관내 시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향후 5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관내 시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등록 시장이나 시장 상인회에 요구할 수 있다.</p>	<p>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 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p> <p>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향 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향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p> <p>제4조(적용범위) 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④구청장은 시장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시장육성계획에는 연도별 투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p> <p>제5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점포는 인정시장 내 적법한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로 한다.</p> <p>②영 제3조제1항의 ‘점유하는 토지면적’은 그 점포가 속한 건축물이 있는 번지의 전체 토지면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2장 시장의 관리 및 운영</p> <p>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p> <p>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p> <p>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6조(인정시장의 운영 및 관리) ①인정 시장에는 상인회를 두어야 하며, 상인회는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인정시장 및 상인회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p> <p>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 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p>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p>

현행	개정안
<p>다.</p> <p><신설></p> <p>제7조(인정시장의 등록취소) ①구청장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시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인정시장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8조(시장의 안전관리 등) ①국비 또는 시·구비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 및 서울특별시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p>	<p>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제3장 인정시장의 운영</p> <p>제7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점포는 시장구역 내 적법한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p>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p> <p>제8조(인정시장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상인을 회원으로 설립된 상점가진흥조합과 민법에 의한 법인, 시장상인을 회원으로 설립된 상인대표단체 및 상법상의 회사인 시장 (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③시장관리자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정비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제3장 <u>시장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u></p> <p>제9조(상인회 설립과 등록) ①상인회는 법 제40조 및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을 등록하여야 한다.</p> <p>②상인회의 회원은 당해 시장내의 1점포 1인으로 한다.</p>	<p>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p> <p>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p>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0조(상인회 기능) 상인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 2. 법 제11조 내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규칙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p><신 설></p> <p><신 설></p>	<p>제10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p>제11조(등록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 1의 경우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정시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규칙 제10조제2항의 보고 등을 태만히 한 경우 3. 상인회의 존속이 시장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인회가 스스로 조직을 해산한 경우 <p>②구청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상인회의</p>	<p>제11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p>

현행	개정안
<p>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2조(보조금 지원 등) ①구청장은 시장 관리자가 시장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보조금의 지원 및 집행·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동일한 시장 내에 수개의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인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④상인회(상법상 회사의 시장)가 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자(법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p> <p>⑤시장관리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억제 등 임차상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p> <p>제4장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p> <p>제12조(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시장 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p>
<p>제13조(서류의 비치) 시장관리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은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제13조(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 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p> <p><삭제></p>
<p>제4장 시설물의 관리 및 시장정비사업</p> <p>제14조(시설물의 소유권) 국가 또는 지방</p>	<p>제14조(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구청</p>

현행	개정안
<p>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공공시설물(토지, 주차장 등)은 영등포구 소유로 한다. 다만 등록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 상인회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장 내 시설물(비가린 개 시설 등)은 등록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다.</p> <p>제15조(시설물의 관리) ①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장관리자에 있으며, 시장관리자는 동 시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철거 및 보수·정비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시장관리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서류(도면포함)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시장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6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p>	<p>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p> <p>제15조(시장 활성화 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시장 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p> <p>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p> <p>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②시장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파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여야 한다.</p> <p>③시장관리자는 정부 또는 시구의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④구청장은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서 및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일괄처리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제17조(시설물의 위탁운영) 공영주차장(시장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을 포함 한다) 등 공유재산 중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구청장이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입점상인 및 시장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17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현행	개정안
<p>제19조(시설물 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p><신설></p> <p>제20조(시장의 정비사업 등) ①영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사업시행 구역을 추천할 경우에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p> <p>②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 경영현대화</p>	<p>제19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p>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p> <p>제20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p> <p>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1조(시행규칙) 시장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1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p> <p>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안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2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안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p> <p>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p> <p>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4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안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 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p> <p>제25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p>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 관할구역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p>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행	개정안
<p><신설></p>	<p>사업비 집행내역</p> <p>2.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자산관리 현황</p> <p>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p> <p>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신청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 태만으로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p> <p>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p> <p>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p>
<p><신설></p>	

현행	개정안
	<p>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p>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p>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p> <p>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p>

현행	개정안
	<p>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p> <p>제31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제3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3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37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p> <p>제38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p>

현행	개정안
	<p>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p> <p>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39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4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p> <p>제41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p> <p>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